

중소 협력업체와 ‘핫라인’ 본격 가동

하도급·유통분야의 불공정행위 상시 직보 채널

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과 ‘핫라인’을 가동, 불공정 거래행위 뿌리뽑기에 나섰다.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 및 건설·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강화에 이어 구두발주,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직접 파악하려는 조치다.

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“중소기업과 공정위 간 쌍방향소통 강화로 볼 수 있다. 대한설비건설협회, 대한전문건설협회,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인을 구축했다”면서 “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없애 이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파악,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겠다”고 말했다.[편집자 주]



공정위는 하도급·유통분야 불공정행위를 상시로 파악하기 위해 8,300여개(영상·통신 3,600개, 백화점·대형마트·홈쇼핑 등 4,700개 등) 중소기업과 ‘핫라인’을 구축, 지난 2월 27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.

핫라인은 우선 영상·통신장비(TV, 휴대전화 등), 자동차·부품, 백화점·대형마트·홈쇼핑 등 중소기업과 대상으로 운영되며, 조만간 건설·유통분야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.

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만큼 중소기업의 교섭력이 보완되고 대기업의 자발적인 불공정행위 차단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.

주요 점검 대상은 △단가 인하 △하도급대금 감액 △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신청

및 협의 △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 동향 등이며 핫라인을 통해 대기업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때는 직권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.

공정위 관계자는 “중소협력사 상당수는 그동안 구두발주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고하려 해도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었다. 납품을 해야 하는데 모든 거래관계가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”이라며 “같은 업종끼리 애로사항을 토로해도 대기업에 확인되는 만큼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별 만남 또는 다른 업종 간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”이라고 설명했다.

공정위는 핫라인과 함께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(<http://hado.ftc.go.kr>) 제보란도 운영하기로 했다.☎

하라인 운영 개요

1. 하도급 분야

1) 대상업종 : “영상·통신장비”, “자동차·부품”

2개 업종부터 우선 추진

- 이들 업종은 ① 협력업체 수가 많고, ② 단가인하가 광범위하며, ③ 기술탈취, 부당단가인하 관련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음
- 2개 업종의 하라인 운영 성과를 점검한 후 다른 업종(건설·용역분야)에 대해서도 확산 예정

2) 기능 : 4가지 동향정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광범위하게 수집

- 원사업자의 단가인하(CR: Cost Reduction) 동향
-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감액 동향
-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 동향
-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 동향

3) 대상업체 : 2개 업종 주요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3,600여개사

4) 운영방식 : 협력업체 직원과 공정위 전담 직원 간 휴대폰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소규모 간담회를 수시로 계속 개최하여 동향파악

* 동향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간담회 또는 개별 면담은 소규모로 진행하고 대기업의 제보 방해 행위도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

5) 보완방안 :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인 구축 및 인터넷 제보란 개설

① 중소기업단체 핫라인

- 중소기업의 신원노출 부담을 줄이고 핫라인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도 동향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단체와도 핫라인 구축

* 중기중앙회, 설비건설협회, 벤처기업협회, 이노비즈협회, 주물공업협동조합, 다이캐스트협동조합, 전문건설협회 등 다수의 중소기업 단체·조합이 참여 예정

- 단체로 접수되는 첩보, 단체가 파악(자체 조사표 발송)한 동향 정보 등을 수시로 공정위와 공유

② 인터넷 제보란

하도급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(<http://hado.ftc.go.kr>)에 제보란을 마련, 중소협력업체의 제보를 상시 접수

후속대책

1) “30대 그룹 동반성장 임원 간담회” 개최 ('12.2.27)

- '11년도 서면실태조사 결과와 핫라인 가동계획을 설명하고, 구두발주·부당단가인하·기술탈취 등 불공정관행의 실질적 개선 당부
- 특히, 핫라인·서면실태조사 방해를 목적으로 협력업체를 단속하거나, 보복하는 경우 엄중 제재할 것임을 경고
- * 핫라인, 서면실태조사시 원사업자의 방해행위도 적극 제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
- * 원사업자가 법위반행위 신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수주기회 제한,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형사처벌(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) 가능

2) 법 위반 사전예방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 실시 (수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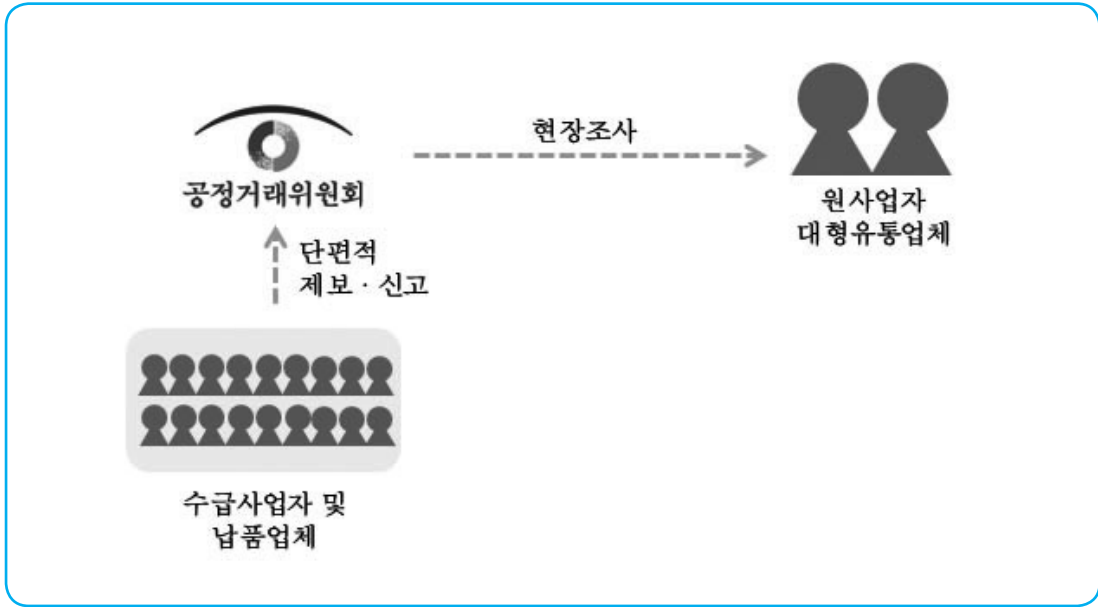
법 위반 행위의 징후가 포착된 업종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불공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

3) 법 위반혐의 포착시 직권조사 실시(상시)

특정업체에 대해 중복적·구체적인 법 위반 혐의가 제보되는 경우 현장 직권조사를 즉시 실시하여 엄중 제재

하라인 구축 · 가동 전후 공정위 법집행 방식 비교

〈하라인 구축 이전〉



〈하라인 구축 이후〉

